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40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준수 및 현황 조사(안 제5조와 제6조)
- 전체 공무원 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 100분의 3,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고용비율 100분의 5 고용 달성
 - 고용률 정착을 위하여 매년 고용현황 조사 및 이행실적 공표
- 라. 시와 군·구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각종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 바. 민간위탁 사업자에게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9조)
- 사.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함(안 제10조)
- 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insuk333@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 한다)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정책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6.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적응훈련
7.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8.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와 군·구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고용을 권고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평가지표 반영)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구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각종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

여 다음 각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9조(민간위탁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취업 후 적응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 보강비, 운영비 등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7.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8.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과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

[별첨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조 - 제27조 - 제28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